

**위임법령 3단비교표 (법률-시행령-시행규칙)**

「선박투자회사법」

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법은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건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해운산업의 활성화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	
<p><b>제1장 총칙 &lt;개정 2007.12.27&gt;</b></p>		
<p><b>제2조(정의)</b>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&lt;개정 2008.2.29, 2013.3.23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"선박투자회사"란 자산을 선박(「선박안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.</li> <li>2. "선박운용회사"란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 등의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회사를 말한다.</li> <li>3. "자산보관회사"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보관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.</li> <li>4. "선박운항회사"란 선박투자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는 선박을 대선(貸船)받아 운항 또는 대선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. [전문개정 2007.12.27]</li> </ol>		
<p><b>제3조(선박투자회사)</b> ① 선박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. ② 선박투자회사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 또는 국외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회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본다.</p>		

<p>③ 선박투자회사는 1척의 선박을 소유하여야 한다. 다만,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회사는 각각 1척의 선박을 소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선박투자회사는 별도로 선박을 소유할 수 없다.</p> <p>④ 선박투자회사 및 자회사는 그 존립기간 중에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다른 선박으로 대체할 수 없다.</p> <p>⑤ 선박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상근 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.</p> <p>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	
<p><b>제4조(「상법」의 적용)</b>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「상법」을 적용한다.</p> <p>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	
<p><b>제5조(명칭의 사용)</b> ① 선박투자회사는 그 상호 중에 선박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이 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선박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 <p>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	
<p><b>제2장 설립·인가·주식의 발행 &lt;개정 2007.12.27&gt;</b></p>		
<p><b>제1절 설립 &lt;개정 2007.12.27&gt;</b></p>		
<p><b>제6조(존립기간)</b> 선박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은 정관으로 정하되, 제13조에 따라 선박투자업을 인가받은 날부터 3년 이상으로 한다. &lt;개정 2013.4.5&gt;</p> <p>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	
<p><b>제7조(발기인)</b>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. &lt;개정 2014.3.24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</li> <li>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</li> <li>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</li> </ol>	<p><b>「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」</b></p> <p><b>제2조(해운·금융 관련 법률)</b> ① 「선박투자회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조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운이나 금융 관련 법률"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. &lt;개정 2011.12.13, 2016.7.28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해운법」</li> <li>2. 「국제선박등록법」</li> <li>3. 「선주상호보험조합법」</li> </ol>	

<p>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</p> <p>4.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운이나 금융 관련 법률(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률을 포함한다. 이하 "해운·금융관련법률"이라 한다)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</p> <p>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</p> <p>6. 이 법 또는 해운·금융관련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·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의 임직원이었던 자(그 허가·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)로서 그 법인에 대한 허가 등의 취소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</p> <p>7. 이 법 또는 해운·금융관련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법인의 임직원에서 해임되거나 면직된 사실이 있는 자로서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</p> <p>② 발기인은 발행할 주식 중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. 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<p>4. 「선박법」</p> <p>5. 「선박안전법」</p> <p>6. 「해양환경관리법」</p> <p>7. 「해사안전법」</p> <p>8. 「선박등기법」</p> <p>9. 「항만법」</p> <p>10. 「항만운송사업법」</p> <p>11. 「한국은행법」</p> <p>12. 「은행법」</p> <p>13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</p> <p>14. 「보험업법」</p> <p>15. 「외국환거래법」</p> <p>16.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</p> <p>17.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</p> <p>18.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</p> <p>②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영업의 허가·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&lt;개정 2013.3.23&gt;</p> <p>1.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</p> <p>2. 허가·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를 발생시킨 위법·부당한 행위로 해양수산부장관, 금융위원회 또는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(이하 "금융감독원장"이라 한다)으로부터 직무정지, 해임요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받은 임원 및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</p> <p>3. 제2호에 따른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사람</p> <p>[전문개정 2009.7.1]</p>	
	<p><b>「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」</b></p> <p><b>제3조(발기인의 주식 인수)</b> 법 제7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"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. [전문개정 2009.7.1]</p>	
<p><b>제8조(정관)</b> ①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, 그 정관에 발기인 전원이 기</p>	<p><b>「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」</b></p> <p><b>제4조(정관의 기재사항)</b> 법 제8조제</p>	

<p>명달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목적</li> <li>2. 상호</li> <li>3. 발행할 주식의 총수</li> <li>4. 1주의 금액</li> <li>5.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</li> <li>6. 존립기간</li> <li>7.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의 한도</li> <li>8. 자산운용의 기본방향</li> <li>9. 수입 분배 및 자본 증감 등에 관한 사항</li> <li>10. 회사의 소재지</li> <li>11. 공고방법</li> <li>12.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</li> <li>13. 선박운용회사와 체결하려는 자산운용계약의 주요 내용(선박운용회사에 지급할 자산운용보수의 기준을 포함한다)</li> <li>14. 자산보관회사와 체결하려는 자산보관계약의 주요 내용</li> <li>15. 선박의 건조·매매·대선에 관하여 체결하려는 계약의 주요 내용</li> <li>16. 발기인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(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상호, 등기번호 및 본점 소재지)</li> <li>17. 그 밖에 선박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</li> </ol> <p>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주식의 총수는 그 상한과 하한을 두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<p>1항제17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&lt;개정 2013.8.27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임원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자산평가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</li> <li>4.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</li> <li>5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(이하 "증권시장"이라 한다)에 상장하는 경우 그 내용</li> </ol> <p>[전문개정 2009.7.1]</p>	
<p><b>제9조(주식 인수의 청약 등)</b> ① 발기인은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 인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취지, 대선계획(貸船計劃)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식청약서를 주식 인수를 청약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 &lt;개정 2008.2.29, 2013.3.23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</li> </ol>	<p><b>「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」</b></p> <p><b>제5조(투자설명서 기재사항)</b>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회사명,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취지 및 본점 소재지</li> <li>2. 대선계획(貸船計劃)의 개요</li> <li>3. 투자계획의 개요</li> <li>4.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에 관한 내용</li> <li>5. 선박의 제원(諸元) 및 관리에 관한 사항</li> </ol>	

<p>2. 정관으로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</p> <p>3. 발기인이 인수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</p> <p>4.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방법 및 주금(株金)의 납입 기일</p> <p>5. 주금납입을 맡을 금융기관과 납입장소</p> <p>6. 이사후보자 및 감사후보자의 성명과 주소</p> <p>7. 자금의 조달에 관한 사항</p> <p>8.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할 선박운용회사의 명칭 및 주소</p> <p>9. 선박의 건조·매입·대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명칭) 및 주소</p> <p>10. 인수의 청약이 있었던 주식의 수가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수에 미달하면 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</p> <p>11. 주식 인수의 청약을 한 자는 일정한 시기까지 선박투자회사가 설립되지 아니하거나 이 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</p> <p>12. 그 밖에 주주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</p> <p>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<p>6. 주요 재무현황(선박매입비용 및 자본조달방법 등)</p> <p>7. 선박운용회사의 개요 및 운용실적</p> <p>8. 수입분배 계획</p> <p>9. 주식의 상장 또는 등록 여부</p> <p>10. 그 밖에 해운 관련 사항(市況) 등 투자자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</p> <p>[전문개정 2009.7.1]</p>	
<p><b>제10조(변태설립의 제한)</b> 선박투자회사는 「상법」 제29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따른 설립을 할 수 없다.</p> <p>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	
<p><b>제11조(이사 및 감사 선임의 의제)</b></p> <p>① 주식청약서에 적힌 이사후보자 및 감사후보자는 주식의 배정이 끝났을 때에 각각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는 창립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	
<p><b>제12조(설립등기사항 등)</b> ①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, 제7호,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</p>	<p><b>「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」</b></p> <p><b>제6조(설립등기)</b> 법 제12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"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.</p>	

<p>2. 정관으로 선박투자회사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</p> <p>3. 명의개서 대리인의 명칭 및 주소</p> <p>4. 이사·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</p> <p>5.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</p> <p>6. 여러 명의 이사가 공동으로 선박투자회사를 대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</p> <p>②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</p> <p>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<p>1. 정관</p> <p>2. 주식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</p> <p>3. 주식청약서</p> <p>4. 이사의 회사 설립에 관한 조사 보고서</p> <p>5. 창립총회 의사록</p> <p>6. 이사 및 감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</p> <p>7. 명의개서(名義改書) 사무의 위탁을 증명하는 서면</p> <p>8. 주금(株金)의 납입을 맡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주금납입 보관에 관한 증명서</p> <p>[전문개정 2009.7.1]</p>	
<p><b>제13조(선박투자업의 인가)</b> ① 선박투자회사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&lt;개정 2008.2.29, 2013.3.23&gt;</p> <p>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를 하여야 한다. &lt;개정 2013.4.5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아닌 경우</li> <li>2. 사업계획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금융질서를 해치는 등 경영의 건전성 확보에 현저히 미흡한 경우</li> <li>3.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이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경영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</li> <li>4. 선박운항회사와 체결할 대선계약이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경영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</li> <li>5. 주식을 공모할 때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</li> <li>6.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</li> </ol> <p>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</p>		<p><b>「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」</b></p> <p><b>제2조(선박투자업의 인가신청)</b> ① 「선박투자회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업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&lt;개정 2005.12.28, 2008.3.14, 2013.3.24, 2017.1.2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상호</li> <li>2. 본점의 소재지</li> <li>3. 임원의 성명, 생년월일 및 주소</li> <li>4. 자본금에 관한 사항</li> <li>5. 소유선박의 명칭과 총톤수 등 선박의 제원</li> </ol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정관</li> <li>2. 창립총회의 의사록</li> <li>3. 임원의 경력에 관한 서류</li> <li>4. 주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</li> <li>5. 인가 신청일 현재 발기인의 주식인수실적과 주요주주 현황 및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면</li> <li>6. 사업계획서</li> <li>7.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에 관한 계약서 사본</li> </ol>
		<p><b>「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」</b></p> <p><b>제3조(선박투자업 인가의 공고)</b>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</p>

<p>위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업무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. &lt;개정 2008.2.29, 2013.3.23&gt;</p> <p>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,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및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. &lt;개정 2008.2.29, 2013.3.23&gt;</p> <p>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	<p>규정에 의한 선박투자업의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. &lt;개정 2008.3.14, 2013.3.24&gt;</p>
<p><b>제2절 인가 &lt;개정 2007.12.27&gt;</b></p>		
<p><b>제13조의2(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)</b>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공선[관공선: 국가가 연불판매(延拂販賣) 방식에 따라 소유하거나 대선받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. 이하 같다]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다. &lt;개정 2008.2.29, 2013.3.23&gt;</p> <p>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 &lt;개정 2008.2.29, 2013.3.23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대상이 되는 관공선</li> <li>2. 선박투자회사에 의한 관공선의 건조계획 및 운용계획</li> <li>3. 연불판매 방식에 따른 관공선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</li> <li>4. 관공선의 건조 등에 관한 국가와 선박투자회사 간의 협약의 내용, 방법, 절차 및 조건에 관한 사항</li> <li>5.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배당률의 수준 및 보장방법 등에 관한 사항</li> </ol> <p>③ 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범위에 관공선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연불판매를 추가한다. 이 경우 연불판매의 기간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선기간으로 본다.</p> <p>④ 관공선의 대선계약은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경영에 적절하여야 하고, 그 대선에 관하여는 제26조를</p>		

<p>준용한다. 이 경우 "선박운항회사"를 "국가"로 본다. &lt;개정 2013.4.5&gt;                  ⑤ 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에는 제3조제3항,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                 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	
<p><b>제14조(인가의 실효)</b> ① 선박투자회사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그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.              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선박투자회사의 신청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&lt;개정 2008.2.29, 2013.3.23&gt;                  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	
<p><b>제14조의2</b> 삭제 &lt;2009.5.22&gt;</p>		
<p><b>제15조(주식의 발행)</b> ① 선박투자회사는 설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여 그 인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주식청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그 주식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② 선박투자회사는 선박의 건조 또는 매입이 끝난 후에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. 다만, 선박운항의 정상화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추가발행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「상법」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. &lt;개정 2013.4.5&gt;                  ③ 선박투자회사의 주주는 선박투자회사의 존립기간 중 해당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.                  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<p><b>「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」</b>  <b>제8조(주식의 발행)</b>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식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                 1.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                 2.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                  3.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발행가액                  4. 청약주식수와 청약증거금                  5. 주식의 배정방법 및 주금의 납입기일                 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에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                 [전문개정 2009.7.1]</p>	
	<p><b>「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」</b>  <b>제8조의2(주식의 추가발행)</b> ①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"선박운항의 정상화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선박운항의 정상화, 선박투자회사의 경영 정상화 또는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주식의 추가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사용하려는 경우를</p>	



	<p>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선박의 연료비, 수리비, 개조비 및 그 밖의 선박관리비용</li> <li>2.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관련 비용</li> <li>3.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</li> <li>4. 선박운항관련 미지급금</li> <li>5. 그 밖에 정상적인 선박운항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</li> </ol> <p>②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"주식의 추가발행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"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주식의 추가발행 횟수는 3회 이내일 것</li> <li>2. 추가발행한 주식의 액면가의 누적금액이 주식의 추가발행 전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 총액의 30퍼센트 이하일 것</li> </ol> <p>[본조신설 2013.10.4]</p>	
<p><b>제3절 주식의 발행 &lt;개정 2007.12.27&gt;</b></p>		
<p><b>제16조(발행조건)</b> ① 선박투자회사는 설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같은 날자에 발행되는 같은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는 발행가액이나 그 밖의 발행조건을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은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시장가치,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. &lt;개정 2008.2.29&gt; 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<p><b>「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」</b></p> <p><b>제9조(주식의 발행가액)</b>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식의 발행가액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6조의8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. 다만,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자(增資)를 결의한 이사회 개최일 전날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개별자산 가치의 합계액에서 현재의 부채를 뺀 금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한다. &lt;개정 2013.8.27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선박의 가격: 취득가액. 다만, 취득 후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시황 등을 고려한 매각 가능금액으로 한다.</li> <li>2. 대선료(貸船料) 수입: 계약 시의 금액</li> <li>3. 유가증권: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</li> </ol>	

	<p>260조를 준용하여 산정. 이 경우 "평가기준일"은 "산정기준일"로 본다.</p> <p>4. 금융기관에의 예치금: 원금과 산정기준일까지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</p> <p>5. 그 밖의 자산: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난 금액</p> <p>[전문개정 2009.7.1]</p>	
<p><b>제17조(주식의 상장 등)</b> ① 선박투자회사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면 지체 없이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이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투자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의 상장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. &lt;개정 2008.2.29, 2013.3.23&gt;</p> <p>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	
<p><b>제18조(주식소유의 제한)</b> ① 선박운용회사, 자산보관회사, 선박운항회사 또는 선박의 건조·매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(이하 이 조에서 "선박운용회사등"이라 한다)와 그 각각의 특별관계자가 소유하는 선박투자회사 주식의 합계는 그 선박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② 선박운용회사등 및 그 각각의 특별관계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면 그 주식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.</p> <p>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용회사등 및 그 각각의 특별관계자가 선박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초과하는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. &lt;개정 2008.2.29, 2013.3.23&gt;</p> <p>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관계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<b>「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」</b></p> <p><b>제10조(특별관계자의 범위)</b> 법 제18조에 따른 특별관계자의 범위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1조에 따른 특별관계자로 한다.</p> <p>[전문개정 2009.7.1]</p>	

<p>[전문개정 2007.12.27]</p> <p><b>제19조(자기 주식의 취득 및 질권의 제한)</b> 선박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.</p> <p>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<p><b>「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」</b></p> <p><b>제11조(자기주식의 취득 및 질권설정의 예외)</b> ① 법 제19조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주식의 소각(消却)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</li> <li>2. 단주(端株)의 처리를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</li> <li>3.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</li> <li>4.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질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</li> </ol> <p>② 법 제19조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선박매각대금 및 용선료(傭船料) 등에 대한 채권의 확보 및 행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.</p> <p>[전문개정 2009.7.1]</p>	
<p><b>제3장 기관 &lt;개정 2007.12.27&gt;</b></p>		
<p><b>제20조(이사의 자격)</b>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.</p> <p>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	
<p><b>제21조(이사회회의 직무)</b> ① 선박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선박의 건조계약 또는 매매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선박의 대선계약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에 관한 사항</li> <li>4. 자금의 차입 또는 사채의 발행</li> <li>5. 선박이나 그 밖의 자산을 운용하는데 드는 비용</li> <li>6. 그 밖에 선박투자회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</li> </ol> <p>② 선박투자회사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선박투자회</p>		

<p>사가 설립될 때에 선박운용회사가 되는 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 이사회는 선박운용회사로부터 보고받은 자산운용명세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	
<p><b>제22조(이사회 의 소집)</b>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회의일 5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각각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.</p> <p>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	
<p><b>제23조(서면 의결)</b> ①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</p> <p>② 이사회를 소집하려는 이사는 이사회 소집을 알릴 때에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면을 보내야 한다.</p> <p>③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이사는 제2항에 따른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적어 이사회 회의일 전달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이사의 수는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의 수에 포함한다.</p> <p>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	
<p><b>제24조(업무의 범위)</b> 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선박의 취득</li> <li>2. 선박의 대신</li> <li>3.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</li> <li>4. 주식의 발행</li> <li>5. 취득한 선박의 관리·매각</li> <li>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</li> </ol> <p>② 선박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업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③ 선박투자회사는 자산을 유가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3조제2항에 따라 설립되는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<p><b>「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」</b></p> <p><b>제12조(업무의 범위)</b>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"란 환율에 따라 선박매매가격 또는 용선료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대비한 보험계약 등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를 말한다.</p> <p>[전문개정 2009.7.1]</p>	

<p><b>제4장 업무 &lt;개정 2007.12.27&gt;</b></p>		
<p><b>제25조(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)</b> 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만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 운영자금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선박의 취득 또는 개조</li> <li>2. 기존 차입금 또는 사채의 상환</li> </ol> <p>② 제1항에 따른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의 한도는 자본금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발행 예정 주식의 액면가 총액의 범위에서 그 자금 차입일 또는 사채 발행일부더 3개월 이내에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납입자본금으로 차입한 자금 또는 발행한 사채를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10배를 초과하여 자금 차입 또는 사채 발행을 할 수 있다.</p> <p>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<p>「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」</p> <p><b>제13조(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)</b>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의 한도는 자본금의 10배로 한다.</p> <p>[전문개정 2009.7.1]</p>	
<p><b>제26조(대선)</b> ① 선박투자회사는 소유하는 선박을 선박운항회사에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선박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른 대선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선박운항회사에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신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2항에 따른 대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	
<p><b>제27조(선박 소유 등의 제한)</b> ① 선박투자회사 및 그 자회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선박검사기관의 검사(이하 이 조에서 "선박검사"라 한다)에 합격한 선박을 소유하여야 한다.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하여는 건조 완료 후 지체 없이 선박검사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「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」</p> <p><b>제15조(선박검사기관)</b> 법 제27조에 따른 선박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선박안전법」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과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</li> <li>2. 국제선급연합회(International Association Classification</li> </ol>	

[전문개정 2007.12.27]	Societies)의 정회원인 자 [전문개정 2009.7.1]	
<p><b>제28조(보험 가입)</b> 선박투자회사는 소유하는 선박에 대하여 인명사고, 선체사고 또는 오염사고 등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 다만, 선박운항회사가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대선받은 선박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선박투자회사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.</p> <p>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	
<p><b>제29조(거래의 제한)</b> 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임원 및 그 임원의 특수관계인</li> <li>2. 선박투자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선박운용회사, 그 선박운용회사의 임직원 및 그 임직원의 특수관계인</li> <li>3. 해당 선박투자회사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및 그 주주의 특수관계인</li> </ol> <p>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<p><b>「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」</b></p> <p><b>제16조(특수관계인의 범위)</b>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제1항 및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1조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한다. &lt;개정 2016.7.28&gt;</p> <p>[전문개정 2009.7.1]</p>	
<p><b>제30조(업무의 위탁)</b> ① 선박투자회사는 선박운용회사에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선박운용회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중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의 모집 또는 매매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선박운용회사가 등록을 할 때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에 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모집 또는 매매에 관한 업무로 한정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 &lt;개정 2008.2.29, 2013.3.23&gt;</p>		

<p>[전문개정 2007.12.27]</p> <p><b>제31조(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) ①</b>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 등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&lt;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13.4.5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삭제 &lt;2013.4.5&gt;</li> <li>2. 삭제 &lt;2013.4.5&gt;</li> <li>3. 삭제 &lt;2013.4.5&gt;</li> <li>4. 삭제 &lt;2013.4.5&gt;</li> <li>5. 삭제 &lt;2013.4.5&gt;</li> <li>6. 삭제 &lt;2013.4.5&gt;</li> <li>7. 삭제 &lt;2013.4.5&gt;</li> </ol> <p>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. &lt;신설 2013.4.5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</li> <li>2. 5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입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</li> <li>3. 상근 임직원 중 해운업 또는 금융업에서의 근무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운용전문인력 및 금융전문인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</li> <li>4. 사업계획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금융질서를 해치는 등 경영의 건전성 확보에 현저히 미흡한 경우</li> <li>5. 임원 중에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</li> <li>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갖추지 못한 경우</li> <li>7.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의 선박운용회사와 그 공모선박투자회사의 투자자 사이 또는 그 공모선박투자회사의 투자자들 사이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경우</li> <li>8.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</li> </ol>	<p><b>「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」</b></p> <p><b>제18조(선박운용회사의 허가요건)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법 제31조제2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입자본금"이란 납입자본금 70억원을 말한다.</li> <li>②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박운용전문인력 및 금융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또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.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해운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운업에서 선박의 금융·건조·용선(傭船)·대선 및 매매 등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. 이 경우 선박운용회사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합산한다.</li> <li>2.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아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대여업에서 자산운용·국제금융 또는 기업금융 등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. 이 경우 선박운용회사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합산한다.</li> <li>3.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조선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한다고 인정한 사람</li> </ol> </li> <li>③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"란 6명을 말한다. 이 경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이어야 한다.</li> <li>④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업계획이 경영의 건전성 확보에 현저히 미흡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한다.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업계획의 수지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</li> <li>2. 사업계획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</li> </ol> </li> </ol>	
--	--	--

<p>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</p> <p>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허가제한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&lt;개정 2013.4.5&gt;</p> <p>④ 선박운용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선박운용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&lt;개정 2013.4.5&gt; 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<p>⑤ 법 제31조제2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주주"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, 임원의 임면(任免) 등 선박운용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(이하 "주요주주"라 한다)를 말한다.</p> <p>⑥ 법 제31조제2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 상태"란 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출자액의 3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. [전문개정 2013.10.4]</p>	
<p><b>제32조(선박운용회사의 겸업 제한 등)</b> ① 선박운용회사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다른 업무를 겸업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&lt;개정 2008.2.29, 2013.3.23&gt;</p> <p>② 선박운용회사의 상근 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 &lt;개정 2008.2.29, 2013.3.23&gt; 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	
<p><b>제33조(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)</b></p> <p>① 선박운용회사는 이 법 및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선박운용회사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선박운용에 따른 수익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또는 이전하는 행위</li> <li>2.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</li> <li>3. 위탁받은 선박의 운용으로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</li> </ol>	<p><b>「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」</b></p> <p><b>제19조(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)</b></p> <p>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"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업무를 위탁한 선박투자회사와의 금전대차(金錢貸借) 행위</li> <li>2. 업무를 위탁한 선박투자회사의 증권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</li> </ol> <p>[전문개정 2009.7.1]</p>	



<p>박운용회사가 부담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</p> <p>4.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</p> <p>5. 그 밖에 선박투자회사 및 그 주주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</p> <p>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	
<p><b>제34조(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및 업무에 관한 세부기준)</b>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	
<p><b>제34조의2(선박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)</b> 선박운용회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나는 날부터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순자산액을 유지하여야 한다.</p> <p>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<p>「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」</p> <p><b>제19조의2(선박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)</b> 법 제34조의2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순자산액"이란 40억원을 말한다.</p> <p>[전문개정 2009.7.1]</p>	
<p><b>제34조의3(선박운용회사의 책임)</b> ① 선박운용회사는 제33조에 따른 행위준칙을 위반하여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선박투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</p> <p>② 선박운용회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된 이사 또는 감사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그 이사 또는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</p> <p>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	
<p><b>제35조(긴급한 계약해지 등)</b> 선박투자회사는 제21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박운용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선박운용회사를 선정하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체 없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선박운용회사와의 업무위탁에 관한</p>		

<p>계약해지 및 계약체결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한다.</p> <p>1. 선박운용회사가 이 법이나 해운·금융관련법률 또는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긴급히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선박투자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</p> <p>2. 선박운용회사가 영업정지·해산 등의 사유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</p> <p>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	
<p><b>제36조(자산보관의 위탁)</b> ① 선박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하는 자산 및 선박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보관업무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자산보관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자산보관회사는 위탁받은 자산 중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업무 등의 위탁에 관한 계약의 체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<p><b>「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」</b></p> <p><b>제20조(자산보관의 위탁)</b> ① 선박투자회사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선박 등 자산의 보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산보관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.</p> <p>1. 선박 및 부동산: 취득하는 즉시 회사 명의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고, 그 서류의 보관을 자산보관회사에 위탁할 것</p> <p>2. 증권, 현금 및 그 밖의 자산: 취득한 즉시 자산보관회사에 그 보관을 위탁할 것</p> <p>② 자산보관회사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증권 중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정된 증권을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.</p> <p>[전문개정 2009.7.1]</p>	
	<p><b>「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」</b></p> <p><b>제21조(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)</b> ① 선박투자회사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의 위탁을 위하여 자산보관회사와 체결하는 자산보관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자산보관회사의 상호</p> <p>2. 자산보관회사의 업무범위,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</p> <p>3. 자산의 보관방법에 관한 사항</p> <p>4. 자산보관회사가 받는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</p> <p>5. 자산보관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</p>	

	<p>에 관한 사항</p> <p>6. 자산보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</p> <p>② 자산보관회사는 자산보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정관</li> <li>2. 사업자등록증 사본</li> <li>3. 대표이사의 법인 인감증명서</li> <li>4. 거래인감신고서</li> <li>5. 이사회 의사록</li> </ol> <p>[전문개정 2009.7.1]</p>	
<p><b>제37조(자산보관회사의 의무 등) ①</b> 자산보관회사는 선박투자회사를 위하여 법령 및 자산보관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자산보관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위탁받은 자산을 건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자산보관회사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자산보관회사의 고유재산 및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<p><b>「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」</b></p> <p><b>제22조(자산보관회사의 의무)</b> 자산보관회사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임직원이 자산보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</li> <li>2. 자산보관회사의 임직원은 위탁받은 보관자산을 자산보관회사의 고유재산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뜻</li> <li>3. 자산보관회사는 자산의 보관을 위탁한 선박투자회사별로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에 따른 자산보관절차를 성실히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뜻</li> <li>4. 자산보관회사는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선박운용회사가 될 수 없다는 뜻</li> <li>5. 자산보관회사는 자산보관업무 관련 기록을 유지하고 장부를 갖추어 보관에 관한 사무처리 및 계산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는 뜻</li> </ol> <p>[전문개정 2009.7.1]</p>	
<p><b>제38조(결산서류의 작성 등) ①</b> 선박투자회사의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 명세서(이하 "결산서류"라 한다)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대차대조표</li> </ol>		<p><b>「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」</b></p> <p><b>제4조(결산서류의 작성기준 및 기재사항 등)</b>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결산서류의 작성기준 및 기재사항은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3</p>

<p>2. 손익계산서 3.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4. 제41조에 따른 수입 분배에 관한 계산서 ② 이사는 주주총회 회의일의 4주 전까지 결산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③ 선박투자회사의 이사는 결산기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④ 결산서류의 작성기준 및 기재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 &lt;개정 2008.2.29, 2013.3.23&gt; 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	<p>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. 다만, 선박투자회사의 결산서류상 당기순이익에서 다음의 제1호 내지 제5호의 금액을 가산하고, 제6호 내지 제9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 중 큰 금액을 한도로 분배할 수 있도록 결산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유형자산감가상각비</li> <li>2. 외화환산손실금</li> <li>3. 제1호 및 제2호 외에 현금순손실없이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는 비용</li> <li>4. 금융리스채권회수액</li> <li>5.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감소액 또는 부채의 증가액</li> <li>6. 차입금의 원금상환액</li> <li>7. 외화환산이익금</li> <li>8. 제6호 및 제7호 외에 현금유입없이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수익</li> <li>9.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증가액 또는 부채의 감소액</li> </ol> <p>[전문개정 2005.12.28]</p>
<p><b>제5장 결산 &lt;개정 2007.12.27&gt;</b></p>		
<p><b>제39조(감사보고서)</b> ① 감사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결산서류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 &lt;개정 2008.2.29, 2013.3.23&gt; 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	<p><b>「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」</b> <b>제5조(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)</b> 감사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감사방법의 개요</li> <li>2. 회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기재가 회계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</li> <li>3. 결산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선박투자회사의 재산 및 손익 상황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</li> <li>4. 결산서류의 작성에 관한 회계방침의 변경의 적정여부</li> <li>5. 이사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</li> </ol>

		<p>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6.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에 장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뜻</p>
<p><b>제40조(결산서류의 승인 등)</b> ① 이사는 이사회에 승인을 받은 결산서류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제39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이사는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대차대조표와 감사보고서를 공고하여야 한다. &lt;개정 2008.2.29, 2013.3.23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서류</li> <li>2. 제39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</li> </ol> <p>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	
<p><b>제41조(수입의 분배)</b> ① 선박투자회사는 자산운용에 따른 수입에서 제25조에 따른 자금 차입 및 사채발행에 따른 상환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금액을 분배하는 경우 「상법」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③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유 선박의 건조기간 중에도 주주에게 금액을 분배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선박을 건조하는 자로부터 선박의 건조가격을 할인받은 경우</li> <li>2. 자본금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이 있는 경우</li> <li>3. 선박운항회사로부터 수입이 있는 경우</li> <li>4. 그 밖의 수입이 발생한 경우</li> </ol> <p>④ 선박투자회사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일정한 날을 정하여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을 분배할 수 있다.</p> <p>⑤ 제4항에 따른 금액의 분배를 위하여 필요한 분배가능금액의 산정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<b>「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」</b></p> <p><b>제23조(수입의 분배)</b>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비용"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에 지불하는 위탁수수료</li> <li>2. 선박 취득을 위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</li> <li>3. 선박의 건조·매매·대선 및 관리를 위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</li> <li>4. 선박등록 및 선박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</li> <li>5.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</li> </ol> <p>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 수입은 용선료, 선박매각대금, 선박 가격 할인액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.</p> <p>[전문개정 2009.7.1]</p>	

<p>[전문개정 2007.12.27]</p> <p><b>제42조(결산서류의 비치 등)</b> 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서류</li> <li>2. 제39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</li> <li>3. 정관</li> <li>4. 주주총회 의사록</li> <li>5. 주주 명부</li> <li>6. 이사회 의사록</li> </ol> <p>② 선박투자회사는 업무를 위탁한 선박운용회사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보내 선박운용회사의 영업소에 갖추어 두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선박투자회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4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선박투자회사는 그의 주주 및 채권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주주와 채권자가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.</p> <p>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	
<p><b>제6장 감독 &lt;개정 2007.12.27&gt;</b></p>		
<p><b>제43조(자산운용명세의 보고)</b> 선박운용회사는 6개월마다 자산운용명세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&lt;개정 2008.2.29, 2013.3.23&gt;</p> <p>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	
<p><b>제44조(감독·검사 등)</b>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투자회사의 건전한 운영 및 주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투자회사,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에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. &lt;개정 2008.2.29, 2013.3.23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제29조에 따른 거래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</li> <li>2. 제31조에 따른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요건을 위반한 경우</li> </ol>	<p><b>「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」</b></p> <p><b>제24조(감독·검사 등)</b> 법 제44조제6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"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정관의 변경 요구(선박투자회사만 해당한다)</li> <li>2. 선박투자회사와 선박운용회사 간에 체결한 위탁계약의 변경 요구</li> <li>3. 선박투자회사의 보유자산 처분 요구</li> <li>4. 주주 등의 손해에 대한 변상 요</li> </ol>	

<p>3. 제32조에 따른 선박운용회사의 검업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</p> <p>4. 제33조에 따른 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을 위반한 경우</p> <p>5. 제37조에 따른 자산보관회사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</p> <p>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직원으 로 하여금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 운용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등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&lt;개 정 2008.2.29, 2013.3.23&gt;</p> <p>1. 제18조에 따른 특별관계자의 주식소유의 제한</p> <p>2. 제25조에 따른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</p> <p>3. 제41조에 따른 수입 분배</p> <p>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 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,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 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나 사전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의 달성 할 수 없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 른 검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문서 로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. &lt;개정 2008.2.29, 2013.3.23&gt;</p> <p>⑤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 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</p> <p>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 른 검사 결과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 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 나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 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(공 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 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를 제외한 다)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률」(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 정으로 한정한다)을 위반한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 다. &lt;개정 2008.2.29, 2013.3.23,</p>	<p>구 [전문개정 2009.7.1]</p>	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<p>2014.1.7, 2015.7.31&gt;</p> <p>1.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</p> <p>2.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 요구</p> <p>3. 그 밖에 위반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</p> <p>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산보관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관련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. &lt;개정 2008.2.29, 2013.3.23&gt;</p> <p>⑧ 제6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 &lt;신설 2014.1.7&gt;</p> <p>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	
<p><b>제45조(금융위원회의 감독)</b> ① 금융위원회는 선박투자회사의 건전한 운영과 주주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박투자회사,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에 해당 금융감독 관련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. &lt;개정 2008.2.29&gt;</p> <p>②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선박투자회사,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의 업무 중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&lt;개정 2008.2.29&gt;</p> <p>③ 금융위원회는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가 금융감독에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(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는 제외한다)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</p>		



<p>또는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(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)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,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.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조치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 &lt;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15.7.31&gt;          [전문개정 2007.12.27]          [제목개정 2008.2.29]</p>		
<p><b>제46조(선박투자업의 인가취소)</b>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 &lt;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13.4.5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해산한 경우</li> <li>2. 선박이 멸실된 경우</li> <li>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</li> <li>4. 인가를 받은 후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건과 제한범위를 위반한 경우</li> </ol> <p>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	
<p><b>제47조(선박운용회사의 허가취소)</b>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용회사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,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 후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 &lt;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13.4.5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해산한 경우</li> <li>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</li> <li>3.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</li> </ol>		

<p>4.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른 허가 제한기준에 2년간 계속하여 해당하게 된 경우</p> <p>5. 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</p> <p>6. 제34조의2에 따른 최저 순자산액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</p> <p>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	
<p><b>제48조(합병 제한)</b> 선박투자회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.</p> <p>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	
<p><b>제7장 합병·해산 및 청산 &lt;개정 2007.12.27&gt;</b></p>		
<p><b>제49조(해산 사유)</b>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나 그 밖의 해산 사유의 발생</li> <li>2. 주주총회의 해산 의결</li> <li>3. 파산</li> <li>4. 법원의 해산 명령 또는 해산 판결</li> <li>5. 제46조에 따른 선박투자업의 인가취소</li> </ol> <p>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	
<p><b>제50조(해산보고)</b> 선박투자회사가 해산하면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은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&lt;개정 2008.2.29, 2013.3.23&gt;</p> <p>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	
<p><b>제51조(해양수산부장관의 촉탁등기)</b></p> <p>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9조제5호의 사유로 선박투자회사가 해산하면 선박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. &lt;개정 2008.2.29, 2013.3.23&gt;</p> <p>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. &lt;개정 2008.2.29, 2013.3.23&gt;</p> <p>[전문개정 2007.12.27] [제목개정 2008.2.29, 2013.3.23]</p>		
<p><b>제52조(선박등록에 관한 특례)</b> 선박투자회사가 선박을 소유할 때에 그 선박가격(선박의 건조계약서 또는</p>		

<p>매매계약서에 표시된 선박의 가격을 말한다)의 100분의 50 이상을 외국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「선박법」 제2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인이 요구하는 국가에 선박을 등록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	
<p><b>제8장 보칙 &lt;개정 2007.12.27&gt;</b></p>		
<p><b>제53조(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)</b> ①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만 주식을 발행하는 선박투자회사로서 주주의 수가 200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미만인 선박투자회사에는 제7조제2항, 제17조, 제18조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) 및 제2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<p><b>「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」 제25조(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) 법 제53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"란 150명을 말한다.</b> [전문개정 2009.7.1]</p>	
<p><b>제53조의2(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)</b>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선박투자회사(이하 이 조에서 "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"라 한다)가 선박을 새로이 건조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심사 시 선박운항회사와 대선기간 등 체결할 대선계약의 대강을 심사하되, 용선료 등 구체적 내용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새로이 건조하는 선박의 인도일 30일 전까지 용선료 등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여 선박운항회사와 대선계약을 체결하고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. ②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제24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</p>		

<p>41조제1항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할 수입 중 투자자 원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순 배당금액에 한정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</p> <p>③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선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대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</p> <p>[본조신설 2013.4.5]</p>		
<p><b>제54조(청문)</b>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&lt;개정 2008.2.29, 2013.3.23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제4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취소</li> <li>2. 제47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취소</li> </ol> <p>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	
<p><b>제5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</b> ① 선박투자회사에는 「상법」 제19조, 제289조제1항·제2항,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,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, 제341조부터 제351조까지, 제352조제3항, 제370조, 제415조의2, 제438조, 제439조, 제458조, 제462조, 제462조의3, 제542조의3, 제542조의4, 제542조의7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42조의8부터 제542조의13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&lt;개정 2013.4.5&gt;</p> <p>② 선박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&lt;개정 2013.4.5&gt;</p> <p>③ 삭제 &lt;2013.4.5&gt;</p> <p>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	
<p><b>제55조의2(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)</b> ① 공모선박투자회사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투자회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선박운용회사(공모선박투자회사가</p>	<p><b>「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」</b></p> <p><b>제18조(선박운용회사의 허가요건)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법 제31조제2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입자본금"이란 납입자본금 70억원을 말한다.</li> <li>②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박운용전문인력 및 금융전문인력</li> </ol>	

<p>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는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,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,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, 제48조,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, 제56조, 제58조,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,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, 제85조제2호·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,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,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, 제184조제1항·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,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, 제194조부터 제200조까지, 제202조부터 제206조까지,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,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,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,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 및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(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운용회사에 대해서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)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&lt;개정 2009.5.22, 2015.7.24, 2015.7.31&gt;</p> <p>② 공모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5조의3부터 제165조의9까지, 제165조의11부터 제165조의18까지 및 제17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&lt;신설 2013.4.5&gt;</p> <p>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모선박투자회사에 제13조에 따른 인가를 하거나 선박운용회사(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는 제외한다)에 제31조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 &lt;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13.4.5&gt; 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<p>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또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.</p> <p>1. 「해운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운업에서 선박의 금융·건조·용선(傭船)·대선 및 매매 등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. 이 경우 선박운용회사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합산한다.</p> <p>2.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아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대여업에서 자산운용·국제금융 또는 기업금융 등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. 이 경우 선박운용회사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합산한다.</p> <p>3.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조선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한다고 인정한 사람</p> <p>③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"란 6명을 말한다. 이 경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이어야 한다.</p> <p>④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업계획이 경영의 건전성 확보에 현저히 미흡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한다.</p> <p>1. 사업계획의 수지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. 사업계획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</p> <p>⑤ 법 제31조제2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주주"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, 임원의 임면(任免) 등 선박운용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(이하 "주요주주"라 한</p>	
---	--	--

	<p>다)를 말한다.</p> <p>⑥ 법 제31조제2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 상태"란 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출자액의 3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.</p> <p>[전문개정 2013.10.4]</p>	
<p><b>제55조의3(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)</b>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구성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6조, 제10조, 제15조제2항,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&lt;개정 2013.3.23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등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선박</li> <li>2. 채권금융기관과 채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이행 등을 위하여 매각하는 선박</li> <li>3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매각하는 선박</li> <li>4. 그 밖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</li> </ol> <p>[본조신설 2009.5.22] [법률 제9707호(2009.5.22)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]</p>		
<p><b>제9장 벌칙 &lt;개정 2007.12.27&gt;</b></p>		
<p><b>제56조(벌칙)</b>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&lt;개정 2014.10.15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</li> <li>2.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투자회사의 업무를 한 자</li> <li>3. 제25조에 따른 목적 또는 한도를 위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</li> </ol>		

<p>사채를 발행한 자</p> <p>4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</p> <p>5. 제3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운용회사의 업무를 한 자</p> <p>6.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</p> <p>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	
<p><b>제57조(벌칙)</b>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&lt;개정 2014.10.15&gt;</p> <p>1. 제27조를 위반하여 선박을 소유하거나 매입한 자</p> <p>2. 제28조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</p> <p>3. 제29조를 위반하여 거래를 한 자</p> <p>4. 제44조제6항제1호에 따른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정지된 업무를 한 자</p> <p>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	
<p><b>제58조(벌칙)</b>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&lt;개정 2014.10.15&gt;</p> <p>1. 삭제 &lt;2009.5.22&gt;</p> <p>2. 제9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투자설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자</p> <p>3. 제18조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자</p> <p>4.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자</p> <p>5.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투자회사의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</p> <p>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	
<p><b>제59조(양벌규정)</b>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</p>		

<p>계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[전문개정 2009.5.22]</p>		
<p><b>제60조(과태료)</b>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&lt;개정 2009.5.22, 2013.4.5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제5조제2항 또는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</li><li>2.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가사항을 변경한 자</li><li>3.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임대한 자</li><li>4.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</li><li>5.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</li><li>6.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보내지 아니한 자</li><li>7. 제44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</li><li>8. 제44조제2항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</li><li>9. 제44조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</li></ol> <p>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부과·징수한다. &lt;개정 2008.2.29, 2009.5.22, 2013.3.23&gt;</p> <p>③ 삭제 &lt;2009.5.22&gt;</p> <p>④ 삭제 &lt;2009.5.22&gt;</p> <p>⑤ 삭제 &lt;2009.5.22&gt;</p> <p>[전문개정 2007.12.27]</p>		